의안번호	제321호
의결연월일	2021. 03. 24.

-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-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03.09. 예산군수

○ 회 부 일 자: 2021. 03.09.

○ 상 정 일 자: 2021. 03. 17.

제26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(환경과장: 이장연)

#### 가. 제안이유

- 2022년 예산군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를 위한 근거 마련
- 환경교육 진흥법,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, 충청남도 환경교육도시 선언(2019. 9. 20.)이후, 환경교육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예산군 조성을 위해 주민 환경교육 제도 및 기반 정비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  - 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
- 환경교육 계획 수립 등(안 제3조)
  -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
  -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·시행
- 환경교육의 지원(안 제4조, 안 제5조)
  -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지원
  - 사회환경교육 지원
- 환경교육센터 설치 등(안 제6조, 안 제7조)
  -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환경교육센터 설치·지정
  -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춘근)

○ 「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」은 2022년 예산군 환경교육도시 지정공모를 위한 근거 마련과 환경교육 진흥법,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, 충남 환경교육도시 선언 이후 환경교육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예산군 조성을 위해 주민 환경교육제도 및 기반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・답변 요지
- ○생 략
- 5. 토론요지
  - 없 음
- 6. 심 사 결 과
  - ○「원안가결」
- 7. 소수의견 요지
- 없 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
  - 없 음